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<b>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</b> 
	배포일시	2018. 3. 15.(목) 총 4매(본문3, 참고1)	
담당 부서 첨단항공과	담당 자	• 과장 오원만, 사무관 정재원, 주무관 원정운 • ☎ (044) 201-4315, 4290	
보도 일시		2018년 3월 1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15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‘드론 띄운다’

### 야간·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도 90일→30일로 단축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공공·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 하고 야간·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「항공안전법」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6일(금) 입법예고 한다.
-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\*이 공공목적 긴급 상황\*\*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·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하였으나,
  - \* 국가기관, 지자체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(現 국립공원관리공단)
  - \*\* ① 재난·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(搜索)·구조 ②응급환자 장기(臟器) 이송 등 구조·구급 ③ 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⑤산림 방제(防除)·순찰 등
-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유로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.
- 또한, 야간·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국토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.
- 『항공안전법』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**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 추가**(시행령 제3조)

- 한국시설안전공단, 한국철도공사, 한국환경공단, 한국도로공사, 한국전력공사 등 **19개 공공기관**을 항공안전법 **적용특례 기관**으로 추가한다.

\* (개정 전) 국가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(1개) (개정 후) 국가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(20개)

② **공공목적 긴급 상황 확대**(시행규칙 제313조의2)

- 그간 소방, 산림분야로 국한되던 공공목적 긴급 상황도 확대한다. 우선,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,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히 드론을 급파하여 점검·관리할 수 있게 되며,
- 시설물의 붕괴·전도, 풍·수해 발생, 수질오염 시에도 드론을 활용한 안전진단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\* (개정 전) 재난·재해시 수색·구조, 산불 진화·예방 등을 공공·긴급 상황으로 규정 (개정 후) 대형사고시 교통장애 복구, 시설물 붕괴·전도 안전진단, 풍·수해 긴급점검 추가

③ **공공목적 긴급 상황 시 비행승인절차 합리화**(시행규칙 제308조)

- 긴급 상황에 한하여 비행승인 절차도 개선한다.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\* 비행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, 법령 개정 시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.

\* 관제권, 비행금지구역 내 또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를 비행하는 경우



\*\* (개정 전) 비행개시 3일전 비행승인 신청 (개정 후) 유선통보 후 비행, 사후 신청서 제출

④ **야간·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단축**(시행규칙 제312조의2)

- 아울러, 기존 90일의 야간·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**30일로 단축**한다.(신기술 검토 등의 사유가 있을시 90일까지 연장)
- 신규제도 신설 및 미국(처리기간 90일)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**90일**의 처리기간을 두었으나 그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다.

\* (개정 전) 특별비행승인 처리기간 90일 (개정 후) 처리기간 30일로 단축(필요시 90일로 연장)

- 국토교통부 주현종 항공정책관은 “이번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수색·구조, 산불진화 등 공공부문에서 긴급한 상황에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,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.”고 밝혔다.
- 이번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(40일간)이고 관계기관 협의,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·시행될 예정이다.
-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“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”에서 볼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,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- \* 의견제출처: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5동 607호,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첨단항공과 / 전화번호: 044-201-4315, 4290, 팩스: 044-201-5632.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정재원 사무관(☎ 044-201-431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
<p>① 항공 안전 법 적용특례 공공 기관 추가</p>	<p>국가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(국립공원관리공단)</p>	<p>국가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(국립공원관리공단, 인천항만공사, 한국가스기술공사, 한국국토정보공사, 한국전력공사, 한국남부발전, 한국도로공사, 한국산림복지진흥원, 한국시설안전공단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해양과학기술원, 해양환경관리공단, 한국전기안전공사, 한국환경공단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, 한국임업진흥원)</p>
<p>② 공공목적 긴급 상황 확대</p>	<p>① 재난·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·구조 ② 응급환자 장기(臟器)이송 등 구조·구급 ③ 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⑤산림 방제·순찰</p>	<p>① 재난·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·구조 ② 응급환자 장기(臟器)이송 등 구조·구급 ③ 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⑤ 산림 방제·순찰 ⑥ 대형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복구 ⑦ 시설물 붕괴·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·재해 발생 우려시 안전진단 ⑧ 풍·수해 및 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</p>
<p>③ 공공목적 긴급 상황 시 비행승인 절차 합리화</p>	<p>공공목적 긴급 상황에서 관제권·비행금지구역 內 또는 25kg 초과 드론 비행시 비행개시 3일전 비행승인신청 필요</p>	<p>공공목적 긴급 상황에서 관제권·비행금지구역 內 또는 25kg 초과 드론 비행시 승인기관에 유선통보 후 비행가능(비행종료 이후 비행승인신청서 제출)</p>
<p>④ 야간·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개선</p>	<p>야간·가시권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90일</p>	<p>야간·가시권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30일(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까지 연장)</p>